

“ 달라지는 금연정책 ”

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시행 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-

1. 전체금연구역(건물·대지포함)

-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, 병 · 의원 및 부속 장례식장, 보건기관 (보건소 · 보건지소 · 보건진료소)의 부지와 건물
- 청소년활동시설(청소년수련관 · 청소년문화시설 · 청소년특화시설 · 청소년야영장 · 유스호스텔 · 청소년이용시설), 도서관,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지와 건물
- 흡연실 설치기준
 -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
 -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가능,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

2. 건물전체금연구역

- 정부청사(국회의 청사 ·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·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기관의 청사 · 지방 공기업 청사)의 부지와 건물
-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의 건물, 대학교의 교사
- 공항 · 여객부두 · 철도역 ·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· 승강장 ·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
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건축물(건축물에 입주한 영업장과 관련된 개별 법령 우선적용)
- 300석 이상의 공연장,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, 관광숙박업소(객실 제외)
-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목욕탕, 청소년게임제공업소 · 일반 게임제공업소 ·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·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건물
- 150제곱미터(45평) 이상의 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 · 제과점영업소, 만화대여업소
- 흡연실 설치기준
 -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 또는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.

3. 기타사항

-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내 전면금연
- 식품접객업소의 연차별 금연 기준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
적용	150제곱미터	100제곱미터	0제곱미터

※ 단란주점 · 유흥주점은 제외

- 커피전문점 ('14.12.31일까지)
- '14.1.1일자 : PC방 전체금연구역
- 흡연시 10만원부과,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('13.7.1일자)



포항시 금연환경조성구역

총계	도시공원	학교절대정화구역	버스정류장	주유소
789	123	248(189)	182	201

- 흡연시 3만원부과('13.9.1일부터)